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9월 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금천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청년”의 연령 기준 수정(안 제3조제1호)
- 중복 조항 수정(안 제5조)
-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수정(안 제9조 제5항제4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조례의 청년의 연령을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와 동일하게 수정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의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 제1호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기존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의 만15세이상~29세이하(시행령 34세이하)에서 서울특별시 조례와 같이 19세이상~39세 이하로 개정하고
 -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청년의 연령 규정은 다양한 사회적, 경제적 요인과 정책 목표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법령 및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.

- 청년 기본법 :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
-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: 만 15세 이상 ~ 29세 이하
-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: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
-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: '예비청년창업자'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
-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: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
- 공급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: 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
-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: 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

- 본 조례 개정안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킨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무 수행 시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우위를 명시한 법제처의 해석(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참조)에 정합

하며,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.
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